

#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반부패 · 안전 관련 10대 법률 제·개정 의견서

---

요약 ————— 3

##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10대 법안

1. 공직자들과 민간기관의 유착에 따른 특혜 등을 막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관법’) 제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 4
2. 안전위험 제거와 부패방지에 필요한 공익제보활성화를 위해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 4
3. 기업의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민법 등 개정 ————— 5
4.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를 지배하는 자의 위법행위 책임 추궁을 실질화하기 위해  
    :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조항 개정 ————— 6
5. 위험, 유해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7
6.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화 하기 위해 :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 7
7. 유해물질과 안전대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8
8. 산재사망에 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8
9.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수직중축 리모델링, 다시 규제하기 위해  
    : 주택법 개정 ————— 9
10.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수명 다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기 위해  
    : 원자력안전법 개정 ————— 10

###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국회는 반부패, 안전 관련 법안 서둘러 제,개정해야

- 각 정당이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여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 심사가 시작됨. 국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함.
-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의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음. 국회가 지난 10월 31일, '후진국형 안전사고 빈발 원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안전 문화 혁신 및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혁신특위'를 구성했지만, 그동안 수차례 만들어졌던 각종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돌이켜 볼 때 특별히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참여연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손질해야 할 법과 제도가 많겠지만, 그동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온 분야에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서둘러 제,개정해야 법률들을 추려 10대 법안에 대한 법률 제·개정 의견서를 마련하게 되었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피아'의 폐해가 재확인되면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패 척결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안전,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영하거나, 기본법인 민법에 반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하는 자에게 회사의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개정, ▲위험 유해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생명, 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화학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유해물질과 안전대책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감시하고 개입할 것을 보장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다시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임.
- 참여연대는 10대 법률 제·개정안을 발표 후 국회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 할 계획임.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의견제시와 로비 활동도 진행할 계획임.

##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10대 법안

### 1. 공직자들과 민간기관의 유착에 따른 특혜 등을 막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공직자들이 퇴직 후 민간기관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수행했거나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하여 특혜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보면, 해운조합에 해양수산 관련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취업한 바 있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법체계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 더 나아가 퇴직한 공직자와 현직 공직자 간의 부적절한 접촉을 제한 및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득이하게 접촉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가 제출한 2014년 6월 23일에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주요 내용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간을 현재보다 1년 늘이고, ▲취업심사 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등을 추가)을 비롯해, ▲ 유대운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정청래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전정희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강기정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민병두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법개정안들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함.
- 더 나아가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규모에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된 기업체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체도 포함시키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함(2013년 7월 참여연대 국회 제출 청원안).

○ 담당 상임위 : 정무위원회(부정청탁방지법), 안전행정위원회(공직자윤리법)

### 2. 안전위험 제거와 부패방지에 필요한 공익제보활성화를 위해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와 규정위반을 조기에 발견해 시정하거나 악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특히 부패행위의 진행을 잘 알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공익제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보더라도, 해운조합과 해양경찰의 부실한 선박안전운항 점검실태나, 선박회사의 안전규정을 위반한 운항실태가 사전에 공익

제보되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

- 그러나 공익제보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데 턱없이 부족함. 국회는 ▲공익제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규모를 높이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 이미 국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청원안> 및 <부패방지법 개정청원안>(2013년 12월 12일 제출)을 비롯해, 정부가 2013년 9월 26일 제출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김기식 의원,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20개의 관련 법률이 제출되어 있음. 국회는 이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해야 함.

○ 담당 상임위 : 정무위원회

### 3. 기업의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민법 등 개정

-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고의로 법규를 무시하거나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더라도 그 배상규모가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면 피해발생 상황을 예방하거나 중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됨.
-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사고위험 가능성과 규정위반임을 알면서도 과적 및 과승 운항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알면서도 정보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나 소비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14년 5월에 국회가 통과시킨 것처럼, 소비자 및 시민의 권리와 안전,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영하거나, 기본법인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영해야 함.

○ 담당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민법),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등

#### 4.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를 지배하는 자의 위법행위 책임 추구를 실질화하기 위해 :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조항 개정

- 현행 상법은 401조 ‘업무집행지시자’ 조항을 통해 법률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으나, ‘업무집행지시’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도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함.
-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법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공식 기록 없이 밀실에서 행하는 영향력 행사를 외부인인 원고들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도,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업무집행 지시를 하였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
-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조항은 기업의 지배주주 등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1998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히 재벌일가가 재벌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도 등기이사가 아닌 등의 사유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조항을 실질화 하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음.
- 이미 18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로 ‘지배주주 등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들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의 영향력 행사 내지 업무관여 사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완화 내지 분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개정에는 이르지 못함(2009.2.24. 박영선 등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참조)
-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됨. ‘업무집행지시’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겠음. 구체적으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지시한 자’ 앞에 ‘명시적·묵시적으로’를 추가해 묵시적인 지시도 업무집행 지시자의 범위에 명문화하여 포함시켜야 함. 또 상법 제401조의2에 “이사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지시를 하였던 사실이 증명된 자는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제2항으로 신설해 과거에 한 번의 업무집행지시가 확인되었다면, 회사의 다른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해서도 지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업무집행지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업무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게 하여 원고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 담당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5. 위험, 유해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안전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는데,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망율 1위를 다룰 정도로 높은 산재율과 산재사망율을 기록하는 등 일터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고용노동부의 인가 없이 외주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금지 업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대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심각하여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적발되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업은 안전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수 천 억 원 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합법적으로 감면받고 있음.
- 이에 도급을 금지하는 위험업무의 종류를 확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 ▲원하청 사용자에게 대한 산업안전예방 의무에 대한 수행을 강화하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용자에게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안전 감시체계에 대한 주민과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13년 5월 28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3년 7월 8일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3년 12월 27일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심사하여 통과시켜야 함.

○ 담당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6.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화 하기 위해 :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 세월호 참사에서 선원 다수가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정규직 남용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남.
-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관련 업무의 경우, 외주를 금지하고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여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안전업무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4년 10월 22일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키고, ▲같은 경우 근로자파견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4년 10월 22일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야 함.



○ 담당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7. 유해물질과 안전대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와 유출되면 위험하거나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음.
- 기업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을 이유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 전국 16,547개 업체 중 86%인 14,225개 업체가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그 중 대기업은 92.5%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유해물질과 안전대책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주민, 지역사회의 감시와 개입을 보장해야 함. 화학 사고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2014년 5월 15일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화학사고 발생이력을 표시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같은 법 개정안(2014년 6월 24일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야 함.

○ 담당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8. 산재사망에 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 산업안전보건법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산업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이 매년 2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산재사망율이 높는데 기업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그 원인 중 하나임.
- 그러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이 있어도 기업주의 법적 책임은 미미한 수준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대부분 미약한 벌금형에 그치며, 징역형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수준임. 이에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대비를 하지 않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위반 사항 중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기업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업주도 징역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기업의 산재대비를 촉구해야 함.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죄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기업의 경우 벌금형 및 관련허가의 취소, 공공조달계약 제한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함.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3년 6월 26일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를 시급히 통과시켜야 함.

○ 담당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9.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시 규제하기 위해 : 주택법 개정

- 박근혜 정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당시 구조도면과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집권 이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함. 2013년 12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었음(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건물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가능. 당초 리모델링은 층수 변동 없이 옆으로 늘리는 것만 가능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밀어붙여 온 국토부 조차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수직증축 관련 타당성 연구에서 부정적 결론을 내린 바 있음. 2011년 7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2012년 12월까지도 “수직증축 범위 확대는 구조안전성 평가가 어렵고 정밀 시공의 한계 등으로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어 허용은 곤란하다” 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2013년 12월 주택법 개정 전과 같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수평·별동증축 등을 허용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수직 증축만큼은 철저히 규제해야 함. 국회는 주택법을 개정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다시 규제해야 함. 또한 지나치게 낡은 건물 등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 수선·보수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함.
- 2014년 9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그나마 건물 구조도 없이도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이는 건설,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입법임. 국회에서 폐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10.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수명 다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 원자력안전법 개정

-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짐. 특히 지난 2011년 원전 설계수명을 넘긴 30~40년 된 후쿠시마 노후 원전 폭발 사고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짐. 지난 60여년 간 전 세계적으로 폐쇄된 143기의 원전의 평균 가동 연수가 23년에 불과함. 그러나 우리는 고리 1호기가 수명연장을 통해 현재 36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1호기는 2012년에 수명을 다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임.
- 문제는 고리1호기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지난 2012년 2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흡사한 전력공급계통의 결합 사고가 발생해 국제 원자력 사건등급 2등급을 기록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공청회는커녕 수명연장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심사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안전성 평가 없이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현재의 수명연장 절차는 국민 전체의 목숨을 건 도박임. 따라서 원전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수명 다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함.
-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 받도록 하고,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야 함.
- 이미 국회에는 김제남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장하나 의원, 조정태 의원, 김제남 의원, 임내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임.
- 나아가 현재 국회에 원자력 진흥 기관보다 낮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전규제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김제남 의원, 유성엽 의원 각각 대표발의)',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한 원자력사업자 종업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개정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최재천 의원, 전순옥 의원 각각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관리 관련 책무와 규제요건을 규정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등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함.

○ 담당 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행일 2014. 11. 06

발행처 참여연대

담 당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 02-725-7104 [jhlee@pspd.org](mailto:jhle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